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7항(종전의 제6항)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감사보고서”를 “다음 각 호의 회계감사 결과”로 한다.
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들의 보호, 이 법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7조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감사보고서”를 “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”로 한다.

1. 감사보고서

2. 금융기관 조회서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)

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0조제7항제3호”를 “법 제40조제9항제3호”로 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조정등의 개최통지)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2.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 및 기피신청 절차
3.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의 제출
4.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

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별표 9 제2호다목 중 “법 제19조”를 “법 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카목 중 “법 제27조제2항”을 “법 제2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등의 보호, 이 법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⑥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<u>감사보고서</u> 를 제출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⑦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회계감사 결과--.</u> <u>1. 감사보고서</u> <u>2. 금융기관 조회서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)</u>
⑦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<u>감사보고서</u> 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⑧ ----- ----- <u>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-----.</u>
⑧ (생략)	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제50조(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	제50조(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

의 해촉) 법 제40조제7항제3호
에서 “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
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의 해촉) 법 제40조제9항제3호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의2(조정등의 개최통지) ①

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
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
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
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
한다.

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
2.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
요이력 및 기피신청 절차

3.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의 제
출

4.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

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
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
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위원의
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하
여야 한다.